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송옥주·민병덕·이연희

박지원 • 한정애 • 문진석

이수진 • 한민수 • 이병진

서삼석 • 박 정 • 이재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 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소요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

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 1.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의 학생
-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4. 그 밖에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워) ① -----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 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 ----급식비----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신 설> 어촌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의 학 <u>생</u>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그 밖에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부족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통학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